

신구조문대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타법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01호, 2021. 5. 25., 일부개정]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1회용 기저귀</p> <p>5. (생략)</p> <p>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p> <p>1.·2. (생략)</p> <p>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p> <p>가.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p> <p>나.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p> <p>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p> <p>라. (생략)</p> <p>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p> <p>(1) ~ (8) (생략)</p> <p>(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p> <p>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p> <p>나. 합성수지 섬유제품</p> <p>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p> <p>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p> <p>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p> <p>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p> <p>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바. (생략)</p>	<p>바.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4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p>
<p>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p> <p><신설> <신설></p> <p>③·④ (생략)</p>	<p>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생략)</p> <p>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p>	<p>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p>
<p>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p>	<p>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p>

<p>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1. ~ 4. (생략)</p> <p>4의2.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p>4의3.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p> <p><신설></p> <p>5. ~ 20. (생략)</p> <p>④·⑤ (생략)</p>	<p>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p> <p>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p>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p> <p>5. ~ 20.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